

가맹거래에서 필수품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2026. 6.

권정순
(변호사 권정순법률사무소)

< 차례 >

<요 약>

I. 가맹거래에서 필수품목이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유 등	4
1. 필수품목 관련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방식 및 모호한 규정의 문제	4
2. 상당수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주 수입원으로 삼는 구조적 문제	5
3. 가맹본부 임의로 필수품목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한 구조적 문제	6
4. 최근, 대법원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의 의미 등	7
II. 필수품목 관련 실제 분쟁 사례	8
1. 공정위 보도자료에 나타난 필수품목 관련 사례	8
2. 필수품목 지정 관련 주요 판례	12
III. 가맹사업에서 필수품목 지정 및 차액가맹금 징수 관련 주장의 대립	15
IV. 필수품목 관련 가맹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공정위 심사지침·공정위 가이드라인의 한계와 문제점	16
1. 가맹사업법에 필수품목의 명시적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공정위 심사지침의 해석을 통해 해결	16
2. 정보공개서 등록시 실질적 통제장치가 없어, 가맹본부에서 자의적으로 필수품목 지정이 가능한 구조	22
2. 필수품목 관련 공정위 가이드라인의 한계 및 문제점	25
IV. 필수품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28
1. 로열티 방식 유도, 필수품목 공급자 확대 방안	28
2. 가맹사업법에 필수품목 정의규정 신설 방안	30
3. 가맹본부에서 임의로 필수품목을 지정하여 발생하는 문제 시정방안	32

〈요 약〉

■ 가맹거래에서 필수품목이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유 등

- 가맹사업법 관련 규정에서 ‘거래상대방구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시행령 별표 등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허용 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분쟁 발생이 불가피.
- 미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률 로열티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맹본부에서는 필수품목 구매로 인한 차액가맹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어 법령이 허용하는 이상으로 필수품목을 지정할 유인 존재.
-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가맹본부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으로 등록하면, 공정위 또는 법원 판단을 통해 취소되기 전에는 강제구매가 불가피한 구조.
- 최근, 피자헛 가맹점주들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최종 승소로 확정되면서 필수품목 관련 분쟁이 차액가맹금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로 논란이 확대됨.

■ 필수품목 관련 실제 분쟁 사례

-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가맹본부에서 가맹본부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도 구매를 강제하고, 위반시 물품공급 중단·계약해지 등의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정위는 이러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대법원은, 가맹사업의 본질상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품 및 용역의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그러한 품질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매 강제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 그러나,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공산품 또는 가맹사업의 중심상품의 균질성과 관련성이 없거나 가맹본부에서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주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매하게 하더라도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구매강제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

■ 가맹사업에서 필수품목 지정 및 차액가맹금 징수 관련 주장의 대립

- 가맹점주측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상호 이익균형을 위해서는 필수품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입장. 헌법재판소 역시, ‘가맹본부에서 필수품목 공급으로 발생하는 차액가맹금을 주 수입원으로 삼을 경우 가맹본부는 상품을 공급할수록 이익을 얻는 구조가 생기며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바, 이러한 결과는 가맹사업법의 입법 취지(법 제1조)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취지로 판시.
- 가맹본부측에서는 ‘차액가맹금 징수는 법상 허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계약이 어려우며,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차액가맹금이 가맹본부의 주 수입원이 되는 구조가 불가피하다’라고 주장

■ 필수품목 관련 가맹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공정위 심사지침·공정위 가이드라인의 한계와 문제점

- 가맹사업법에 필수품목의 명시적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및 공정위 심사지침의 해석을 통해 해결. 시행령 별표에서는, 1) 상품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필수품목의 세부내역 등을 가맹점주에게 알리고 가맹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며, 4)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기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는 경우 허용. 가맹계약서상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 기재사항이 된 이상 가맹사업법에서 필수품목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
- 현행 법령상 가맹본부에서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 등을 기재할 경우 사전통제장치가 부재. 정보공개서 기재 필수품목이 가맹사업 본질에 비추

어 적절하고 ‘공정위 심사지침’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공정위 가이드라인’ 및 ‘공정위 필수품목 변경 고시’ 일부 내용 중 가맹사업법 제1조에 규정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수정이 필요.

■ 필수품목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 공정위에서는, 각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과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및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직권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미흡시 시정조치를 통해 가맹본부의 로열티 방식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또한, 가맹점주단체가 조직한 협동조합을 필수품목 공급자에 추가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단체의 협의를 통해 필수품목 공급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필수품목 및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
-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및 공정위 심사지침 등을 참고하여, 가맹사업법에 필수품목 정의규정을 신설할 필요.
- 가맹본부에서 임의로 필수품목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서에 등록할 경우, 공정위 또는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위 품목에 대한 강제구매가 불가피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에 이의가 있는 가맹점주의 신청 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직권으로 필수품목 지정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간이분쟁조정절차 신설 필요.

I. 가맹거래에서 필수품목이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유 등

1. 필수품목 관련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방식 및 모호한 규정의 문제

- 가맹사업은 본질상 일정 정도의 통일성 유지가 필요하므로, 가맹본부에서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으로 강제하는 방식으로 필수품목¹⁾ 구매가 허용되고 있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점주)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다만, 가맹사업법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 2〕 및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제정한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공정위 심사지침’)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 위와 같이,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하는 방식이고, 허용되는 요건이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분쟁 발생이 불가피
 - ‘공정위 심사지침’에서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예외적으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 구입강제품목이라고도 함

로 허용하고 있음

- 즉, 허용되는 예외와 관련한 각 요건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 발생이 불가피

2. 상당수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주 수입원으로 삼는 구조적 문제

- 미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률 로열티 방식²⁾을 채택하고 있어 필수품목을 둘러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발생의 여지가 많지 않으나³⁾,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가맹본부에서 필수품목 구매로 인한 차액가맹금⁴⁾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어 법령이 허용하는 이상으로 필수품목을 지정할 유인이 존재
- 미국은, 가맹본부에서 구입하는 원재료가 프랜차이즈 운영에서 필수적인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가맹본부가 가맹점 물품 구입을 강제하는 것은 반독점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온 1971년부터 로열티가 가맹본부의 주 수입원으로 자리 잡음.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신뢰 하에 외식업 가맹점들이 10% 이상의 로열티와 2% 가량의 마케팅비를 내면서 필수품목 관련 분쟁이 사라짐⁵⁾
- 공정위에서 2024년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1만 2천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 계속가맹금을 수취하는 가맹본부는 79.5%에 이르며, ‘로열티로만 수취’ 29.5%, ‘차액가맹금과 로열티 방식 병용’ 29.5%, ‘차액가맹금으로만 수취’ 17.5%로 나타남⁶⁾. 계속가맹금을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수취하는 이유는, ‘가맹점 매출 파악 곤란(23.0%)’, ‘계속가맹금 수취 변경 유인 부재(17.5%)’가 가장

2)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브랜드 및 노하우 사용료로 수취하는 방식

3) 로열티 방식은, 가맹점주 매출에 비례하여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금 지급 규모가 정해지므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공통의 이익증진에 부합하는 방식

4)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의미

5) IB 토마토, 2025. 1. 6. “(차액가맹금 논란)③로열티 도입vs현행 유지... 가맹점·본부 갈등 ‘팽팽’”

6) 공정위, 2025. 12. 30.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많았으며,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계속가맹금을 로열티 방식으로 변경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은 76.6%로 나타남.

3. 가맹본부 임의로 필수품목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한 구조적 문제

-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가맹본부에서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필수품목으로 정보공개서에 등록하면, (공정위 또는 법원에서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전에는) 가맹점주들은 위 품목에 대한 강제 구매가 불가피한 구조
- 가맹본부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으로 기재하더라도 정보공개서 등록을 담당하는 공정위 및 광역 시·도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불가능한 구조
- 가맹사업법 제6조의 3 및 제6조의 4에서 각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및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필수품목으로 기재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율이 존재하지 않음
- 공정위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필수품목 내역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 제도 인지율은 66.5%,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제 인지율은 52.2%로 나타남. 각 제도의 대략적인 내용까지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46.8%, 30.7%임.
- 경기도에서 가맹본부 122개와 도내 가맹점주 610개를 대상으로 한 ‘2025년 도내 가맹사업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53%가 차액가맹금이 존재한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금액은 연간 224만원으로 조사됨.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차액가맹금의 규모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45.2%에 불과했으며,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차액가맹금에 대한 무관심이 72.1%로 가장 높게 나타남⁷⁾

7) 경기남부뉴스, 2026. 1. 14. “경기도 가맹점주 상당수 “로열티 외에 차액가맹금 본사에 내지만 구체적 액수는 몰라””

4. 최근, 대법원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의 의미 등

- 필수품목은 차액가맹금으로 연결되는 구조인데, 최근 대법원에서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수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미 지급한 차액반환금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라고 판결(대법원 2024다294033 판결)⁸⁾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있음
-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정된 원·부재료를 공급받는 것은 거래 대상·상대방·가격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 통상적인 물품거래와 다르고 차액가맹금을 가맹계약과 무관한 (일반적인) 물품 거래의 유통마진으로 보기 어려우며, 물품 거래 및 물품 대금의 지급만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자발적인 차액가맹금 지급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판시
- 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종전에는 가맹본부에서 필수품목으로 정한 개별 품목이 가맹사업법 관련 규정 및 ‘공정위 심사지침’에서 정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서, 필수품목 구매로 발생한 차액가맹금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로 논란이 확대
- 위 대법원 판결이 흔히, ‘유통마진’으로 불리우는 차액가맹금을 불허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 즉,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법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가맹본부에서 수령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가맹본부에서 차액가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넘어)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수령 관련한 구체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

● 위 대법원 판결 이후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관련 주요 현황

8) ‘피자헛’ 일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맹본부에게 215억원 상당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됨. 가맹본부는 위 사건 항소심 선고 후 회생절차를 신청함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소송 현황		
브랜드명	진행상황	로열티 유무
롯데프레시	1심	○
BHC	1심	×
배스킨라빈스	1심(조정회부)	×
교촌치킨	1심	×
푸라닭 치킨	1심	×
BBQ	1심	×
투썸플레이스	1심(조정회부)	○
굽네치킨	1심	×
처갓집양념치킨	1심(조정회부)	×
두점	1심(단독→합의부 이송)	○
지코바치킨	1심(단독→합의부 이송)	미공개
맘스터치	1심(단독→합의부 이송)	×
버거킹	1심(조정 불성립 후 본안 소송)	○
포토이즘	1심	미공개
땅땅치킨	1심(소액→단독 재배당)	○
원할머니보쌈족발	1심	미공개
메가MGC커피	소장접수예정	○
던킨/던킨도너츠	소장접수예정	×
할리스	소장접수예정	○

*출처 조선비즈 2026. 1. 21. 기사 (피자헛 판결이 남긴 차액가맹금 쟁점은 ‘얼마를 어떻게’... 20여 개 브랜드 소송 향방은)

II. 필수품목 관련 실제 분쟁 사례

1. 공정위 보도자료에 나타난 필수품목 관련 사례

- 도넛·커피 전문 가맹본부인 A(주)가 가맹점주에게, 주방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⁹⁾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21억 3,600만원) 부과¹⁰⁾
- A(주)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은 ‘도넛·커피’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가맹본부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

9) 주방 작업대, 매장 진열장 등 주방 및 홀 설비 33개, 채반 등 집기류 2개, 진열용 유산지 등 소모품 3개

10) 공정위, 2025. 3. 13. 보도자료.

- 족발 판매를 주로 하는 B(주)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 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9,400만원)을 부과¹¹⁾
 - B(주)는 2023. 11. 29.부터 2025. 1. 8.까지 가맹점주에 대하여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 용기(13종)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위반시 물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포함.
- 치킨 가맹본부 C(주)가 가맹점주들에게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등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¹²⁾.
 - C(주)는 가맹점주로 하여금 2018. 7. 5.부터 2024. 2. 26.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위반시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
- 치킨 가맹본부 D(주)가 가맹점주들에게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¹³⁾
 - D(주)는, 2022. 11. 22.부터 2024. 7. 31.까지 가맹점 또는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하여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용도의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위반시 물품·자재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
-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본부인 E(주)가 단순 영업표지만 기재된 수저(세트)와 일반 공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서 시정명령¹⁴⁾.

11) 공정위, 2025. 3. 17. 보도자료.

12) 공정위, 2025. 5. 29. 보도자료.

13) 공정위, 2025. 5. 29. 보도자료.

- E(주)는, 일반 공산품인 ▲은박 보냉백('20.3.4. ~ '24.9.3.), ▲떡볶이 용기 세트('23. 7. 11. ~ '24. 9. 3.)와 영업표지가 인쇄된 ▲수저 세트('21. 8. 6. ~ 현재)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
- 해당 물품들은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사업에 필수적인 품목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유사·대체상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중심 상품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물품 구매 강제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

- 즉석 음식(패스트푸드) 가맹상표를 운영하는 F(주)가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제(15종)를 자신 또는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¹⁵⁾
 - F(주)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15종)와 토마토를 가맹본부의 규격에 따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안내. 그러나,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의 세척제들과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들의 토마토만을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해놓고,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맹점 점검 시 해당 제품들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가맹점 평가점수에서 감점 조치
 - 즉, F(주)는 세척제를 가맹점주들이 자율적으로 구매해도 되는 '권유' 품목들로 지정했음에도, 개별 구매가 어려운 특정 제품 사용 여부를 점검하여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들 제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 세척제들의 경우 위 가맹사업의 중심 상품인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동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특정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G(주)가 2015년 3월과

14) 공정위, 2025. 7. 25. 보도자료. 가맹본부가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는 면제

15) 공정위, 2025. 8. 13. 보도자료.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2개 매장 운영)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PB상품(김치말이 육수 등 22종) 및 일부 배달 용기(비닐봉투 등 4종))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하여금 해당 품목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경고¹⁶⁾.

-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통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그러나, G(주)는 당초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필수품목의 추가 가능성’을 기재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위 ‘필수품목이 추가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고지한 것 외에 가맹점주와 추가 필수품목 관련 내용이 편입된 가맹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 등을 하지 않은 채 해당 품목의 구입을 강제함.

○ 피자 가맹본부 H(주)가 피자 고정용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자신 등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 7,600만원)을 부과¹⁷⁾.

- H(주)는, 정보공개서에 2019. 4. 23.부터 2023. 4. 24.까지 피자 고정용 삼발이를, 2022. 4. 11.부터 2023. 4. 24.까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에게 자신 또는 지정된 물류업체로부터만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위반시 물품공급 중단, 계약 해지, 위약금 등을 가맹계약에 포함. 구체적으로 가맹계약서상 위약별 조항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다른 구매처에서 구매할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

○ 커피 가맹본부 I(주)가 제빙기·그라인더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 및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9억 1,700만원) 부과¹⁸⁾.

16) 공정위, 2025. 8. 14. 보도자료

17) 공정위, 2025. 9. 5. 보도자료

- I(주)는, 가맹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지 않는 경우 원·부재료 등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하여 가맹점주에게 구입을 강제.
- 그러나, 해당 제빙기와 그라인더는 시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려움. I(주)는 제빙기·그라인더를 각각 26% ~ 60%의 마진율로 가맹점주에게 공급하여 상당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

2. 필수품목 지정 관련 주요 판례

○ ‘치킨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주가 치킨 제품을 판매할 때 양배추 샐러드와 백각두기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사실상 방지하면서 신선육을 공급함에 있어서도 양배추 샐러드는 가맹점주의 신청에 따라 공급하던 영업정책을,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의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치킨 제품을 판매할 때 양배추 샐러드만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신선육을 공급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양의 양배추 샐러드를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공급받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가맹사업에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주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가맹점주로 하여금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그러한 품질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

○ ‘패스트푸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판매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도록 하거나 그 공급 상대방의 변경을 제한하는 행위가 법령¹⁹⁾상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가맹본부

18) 공정위, 2025. 10. 1. 보도자료

19) 이번 사안이 문제된 시기에는 현재와 같이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거래상 대방 제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때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같

가 가맹점주의 판매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도록 하거나 그 공급 상대방의 변경을 제한하는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인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 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과 공급 상대방이 제한된 상품과의 관계,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가맹점주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두332 판결)

-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①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중심 상품인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의 맛과 품질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는 탄산시럽(사이다, 콜라), 후르츠각테일, 밀감, 천연제리, 가당연유, 오렌지쥬스, 빙수용찰떡, 모카시럽, 케첩(퍽), 피클, 그나뉴당, 마스터드, 슈가(퍽), 카넬콘, 후라이오일, 액상제리 등 16개의 일반 공산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유통과정, 유통기한 등을 관리·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가맹본부가 위 16개의 일반 공산품을 가맹점주에게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격을 시중 거래가격 이상으로 책정하여 부당한 이윤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강제는 법령상 허용된다고 판단. ② 그러나, 주방용세제, 폴리백, 청소용 페이퍼타올, 더스터, 케이(kay)-5 등 5개의 일반 공산품의 경우에는, 가맹사업의 중심 상품인 패스트푸드의 맛과 품질의 균질성과 관련이 없는 점, 위 5개의 일반 공산품이 원고가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일반 공산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위 5개의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는 원고가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주가 자유롭게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5개의 일반 공산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공급받도록 하는 것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③ 냉동고, 냉장고, 콜드테이블, 워크테이블, 셰이크머신, 소프트머신, 제빙기, 드리들패티캐비닛, 후라이어패티캐비닛, 마이크로오븐기 등의

주방기기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동일한 품질의 유지와 관련이 있고, 인테리어 공사는 점포 레이아웃의 통일적 이미지의 유지와 관련이 있는 점, 주방기기는 가맹점의 개점 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공급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서 가맹본부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구입하도록 한 것에 합리성이 있는 점, 인테리어 공사는 가맹본부가 전국에 7개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함으로써 가맹점주에게 선택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 ④ 그러나, 1인 의자, 테이블, 빠의자, 금전등록기, 전산장비(pc)에 대하여도 주방기기 및 인테리어 공사에서와 같은 이유로 가맹본부로부터만 공급받도록 하는 것은, 위 5개의 설비와 용도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주력상품 내지 중심 상품인 패스트푸드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과 관련이 없는 점, 위 5개의 설비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주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매하게 하더라도 그 설비의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가맹사업법에서 거래 상대방 제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규율한 이후 대법원은, 위에서 살핀 요건에 더해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여야 하는 사정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거나, 그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있거나 하면 언제나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고 판시(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 용품의 공급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특정 사업자에 맡기도록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

당 가맹사업은 가맹점주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로열티로 받는 구조라는 점'을 밝히면서, '인테리어 공사는 기본공사 부분과 추가공사 부분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추가공사 부분은 다른 업체를 선택할 권한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가맹본부의 행위를 가맹사업법상 허용되는 거래강제행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III. 가맹사업에서 필수품목 지정 및 차액가맹금 징수 관련 주장의 대립²⁰⁾

-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가맹사업에 대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주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가맹점주 측에서는 '가맹사업은 그 본질이 무형가치 산업 성격이 기본속성으로 우수한 기술이나 노하우 등의 사업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본력이 부족한 사업자(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의 개별 소자본을 결합하여 가맹본부가 보유한 우수한 사업모델을 확산함으로써 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라고 하면서 필수품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²¹⁾.
- 헌법재판소 역시 '가맹본부에서 필수품목 공급으로 발생하는 차액가맹금²²⁾을 주 수입원으로 삼을 경우, 가맹본부는 상품을 공급할수록 이익을 얻는

구조가 생기므로 가맹점주에게 물품 구입을 강요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바, 이러한 결과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가맹사업법의 입법 취지(제1조)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취지로 판시²³⁾

- 반면, 가맹본부측에서는 '가맹사업법상 차액가맹금 방식의 가맹금 징수가 허용되어 있다'거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는 "국내 프랜차이즈업계는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계약이 어려우며,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차액가맹금 방식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라고 하면서²⁴⁾ 필수품목 지정 및 이에 따른 차액가맹금이 가맹본부의 주 수입원이 되는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주장
- 필수품목 지정 및 차액가맹금 관련해서 대립되는 각각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상호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IV. 필수품목 관련 가맹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공정위 심사지침·공정위 가이드라인의 한계와 문제점

1. 가맹사업법에 필수품목의 명시적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공정위 심사지침의 해석을 통해 해결

- 2024. 1. 2.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으로 제11조 제2항 제12호 규정 신설에

20) 이하의 내용은, 권정순, 2025. 12.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토론회 발제문 “가맹사업 필수품목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 일부를 수정, 보완
 21) 정종열, 2023. 6. 22. “가맹사업 필수품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제문
 22) 특정 품목이 필수품목으로 지정되었다라도 '가맹본부 등'에서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면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차액가맹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논리적으로는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발생은 별개의 문제. 그러나, 필수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차액가맹금을 징수하게 되므로, 관행상 양자를 구분할 실익이 크지 않음

23) 헌법재판소 2019마288호
 24)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2025. 8. 24. “한국프랜차이즈協,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보조 참가 신청한다” 보도자료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이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됨.

- 위 규정에서 필수품목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는 위 조항 시행(2024. 7. 3.)을 즈음하여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공정위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위 조항이 필수품목과 관련된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힘.
-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2. 구속조건부 거래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이하, ‘거래상대방의 구속 관련 별표 조항’) 및 ‘공정위 심사지침’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문의 여지가 없음.
- 즉,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이하, ‘가맹본부 등’)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위 별표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법원 판례 및 공정위 의결서 등에서도 위 별표 조항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거래상대방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13조제1항관련)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

- 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세부내역 및 그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이를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것
- (4) 가맹본부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세부내역, 가격, 수량, 품질 및 그 거래상대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칠 것

○ ‘공정위 심사지침’에 나타난 ‘거래상대방의 구속’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음.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별표2)

- 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③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1) 대상행위

- (가)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 (나) 거래의 대상은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상품이나 원재료·부재료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 등이 포함된다.
- (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를 포함한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다음과 같다.
 - ①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행위로서 해당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는 물론 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② 거래상대방을 예외 없이 제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예외요건을 엄격히 설정함으로

써 가맹점사업자가 사실상 거래상대방의 선택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강제행위를 실제로 이행하였는지, 미이행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졌는지, 거래상대방 강제를 통해 가맹본부가 이익을 얻었는지는 강제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야 하는 사정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거나 그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2) 위법성 판단기준

(가) 가맹사업에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그러한 품질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특정한 거래상대방의 상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선택과 관련한 가맹점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자유로운 시장기능을 저해하여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될 수 있다.

(나)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하는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과 설비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① 객관적으로 상품·원재료·부재료·설비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인지, ②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③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상품의 사용 목적, 기능, 구조에 비추어 날개로 사용되는 독립적인 상품이 아니라 개별 구성 상품을 결합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지를 판단할 때 구성 상품 각각을 별개로 판단하지 않고 이들을 하나의 기능을 하는 일체의 상품으로 보아 판단할 수 있다.

-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③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3)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예시)

- ①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상품 등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중심상품 품질의 균질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공산품
- ㉡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중심상품 품질의 균질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설비·장비
- ㉢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중심상품 품질의 균질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역
- ② 가맹본부가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거래상대방을 정하여 구매하도록 하여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상품 등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 가맹본부가 주문·생산한 물품이라거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해 유통관리나 위생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시판용 부재료
- ㉡ 시중에서 용이하게 동일한 기능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도구
- ㉢ 시중에서 용이하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회용품 (가맹본부가 자체 제작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용이하게 구할 수 있는 경우 포함)
- ㉣ 시중에서 용이하게 동일한 기능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설비

〈①, ㉠~㉢, ㉡, ㉣~㉥에 해당될 수 있는 구체적인 품목 예시〉

- 김밥 가맹사업에서 중심상품인 김밥 등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가맹본부가 특별히 주문생산한 물품이 아니고 시장에서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임의로 구입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없는 소독용품, 주방용세제, 장비세척제, 위생용품, 청소용품, 국물용기, 반찬용기, 마스크어 등 일반공산품
 - 패스트푸드 가맹사업에서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중심상품인 패스트푸드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과 관련이 없고, 가맹본부가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자유롭게 구매하게 하더라도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없는 1인용자, 테이블, 뱀의자, 금전등록기, 전산장비(PC) 등 설비·장비
 - 커피 가맹사업에서 시중구매가 가능하고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가맹사업에 필수적이거나 거래가 강제되지 않을 시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의 동일성 유지가 어렵다고 보기 어려운 라탄의자, 라탄소파, 테라스 의자, 흡연실 의자 등 가구·용품
 - 치킨 가맹사업에서 중심상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양념 제조법 등에 해당되지 않고,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시장에 다수 존재하는 해충방제서비스 등 용역
 - 치킨 가맹사업에서 가맹사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맹본부가 정해 놓은 품질기준이나 사양이 존재하지 않고 특별히 주문제작한 상품도 아니어서 임의로 구입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없는 넵킨, PT병, 대나무포크 등 부자재 및 가위, 칼, 도마, 국자, 바구니, 저울, 타이머, 양념통, 온도계 등 주방잡기
 - 김밥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였으나 시장에서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규격과 재질을 특정하여 요구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보증을 구현할 수 있는 만두짬뽕 등 부자재
- ※ 특정품목이 위에서 예시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품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해당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③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그 기준에 맞추어 다른 시공업체에게 시공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1개의 업체에만 시공을 맡기도록 하는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강제하는 행위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시공에 대한 감리비용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해 지나치게 고가로 책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시공하도록 사실상 구속하는 행위

⑤ 홍보전단지 등의 경우 반드시 동일한 디자인과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거나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을 엄격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가맹점사업자별로 영업활동 지역의 환경과 특색에 맞추어 제작할 경우 더 큰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만 제작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가맹계약서상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 기재사항이 된 이상 가맹사업법에서 필수품목에 대해 명시적 정의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²⁵⁾. 가맹사업법에 명시적 정의규정 신설이 필요한지 여부 및 만약, 정의규정을 신설한다면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

2. 정보공개서 등록시 실질적 통제장치가 없어, 가맹본부에서 자의적으로 필수품목 지정이 가능한 구조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및 등록 관련 가맹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음²⁶⁾

가맹사업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시행령 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②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25) 2025. 4. 이강일 의원 대표 발의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됨(의안번호 제2210132호)

26) 본 리포트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은 일부 생략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보공개서
 2.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직영점은 영업개시일) 및 전화번호를 적어야 한다]
 4.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5.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신청하는 때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3. 사업자등록증
-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등록신청일부터 30일(법 제6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하며,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이하 “가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회에 한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필요한 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서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내용이 빠진 경우
 2.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⑥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제5항에 따른 변경 또는 보완 요구에 가맹본부가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5조의4(정보공개서의 공개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공개일 10일 전까지 가맹본부에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1. 공개 목적과 공개 기간
2. 공개 내용
3. 공개 방법
4. 가맹본부의 정정 또는 비공개 요구 방법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맹본부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가맹본부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정보공개서의 공개 내용을 변경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4.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5.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및 등록 관련 가맹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종합할 때, 정보공개서 등록 기관에서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 거짓인 경우 등에만 등록을 거부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가맹사업 본질에 비추어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필수품목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없는 구조
- 따라서, 필수품목을 폭넓게 지정하여 이를 통한 차액가맹금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가맹본부에서 가맹사업 본질과 무관한 물품 또는 용역을 필수품목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더라도, 사전에 이를 통제할 방안이 존재하지 않음.
- 가맹점주가 사후적으로 공정위 및 법원 판단을 통해 필수품목 지정의 적정성 등을 따질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 또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4 제3항 등에 따르면, 가맹본부에서 필수품목으로 지정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면 해당 사항은 비공개하여야 하므로, 공개된 정보공개서만으로는 필수품목 지정의 적정성 등을 전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 따라서, 가맹본부에서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으로 기재한 용역 또는 물품이 가맹사업 본질에 비추어 적절하고, '공정위 심사지침'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3. 필수품목 관련 공정위 가이드라인의 한계 및 문제점

-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공정위에서는 24년 6월 필수품목 관련 사항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되는 것을 계기로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이하, '공정위 필수품목 변경 고시')를 제정함.
- 위 공정위 가이드라인 및 고시가 필수품목 관련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맹사업법의 목적(제1조)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

- 공정위는 위 가이드라인 첫 부분에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가이드라인 내용이 법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규범에 준하는 것으로 통용될 것이므로 가이드라인 일부 내용이 가맹사업법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관련 판례 및 공정위 판단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혼란 발생 우려.
- 가이드라인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6쪽 등에서 '구입강제품목 종류의 변경 사유 및 주기'에 대해 언급하면서, 구입강제품목 변경 주기를 미리 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변경할 경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 이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미리 정한 변경 주기에 위반하여 필수품목 종류를 변경할 경우 무효로 한다'라는 취지를 추가할 필요. ② 9쪽에서 <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의 기본 원칙>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위 ①과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기재된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가격 변동의 한계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함'에도 가맹본부에서 위 기재와 달리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따른)상한을 초과하여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인상할 경우 무효로 한다'라는 취지를 추가할 필요 ③ 11~13쪽에서는 <공급방식에 따른 공급가격 결정기준 기재 방법> 관련하여 직접(위탁)제조, 재판매, 제3자공급으로 분류하여 언급하면서 12쪽에서는 "가맹본부가 기 제조된 상품 등을 구매하여 구매한 상태 그대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상표 부착, 소분 등 단순 가공만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를 '재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언급하였음. 그런데, '재판매' 관련한 위 설명에 따를 때 해당 물품이 필수품목에 해당하는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제기됨. 특히, "재판매 상품의 경우 시중에 동일한 상품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라는 언급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함. '공정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재판매" 물품 등은 필수품목에 해당할 여지가 많지 않음에도 가맹본부에서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치 시중에서 품질이나 기

능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제품을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도 필수품목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으므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 ‘공정위 필수품목 변경 고시’는, 2024. 6. 4.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2024. 12. 5. 시행)으로 구입강제품목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요건이 절차적 요건에 추가되면서, 세부적인 판단기준 및 유형을 정하고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 집행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위 고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Ⅲ. 협의방식 2. 협의시기’ 관련하여 “협이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에 협의를 거치면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상당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조건 변경 후에 협의를 거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위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에서 ‘기존 제품 철수 및 신제품 출시 등 구입강제품목이 변경될 수 있는 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아울러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필수품목을 변경한다면 변경주기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공급가격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여야 한다’거나 ‘필수품목의 공급가격 및 공급가격 결정기준 변경 사유 및 주기와 관련하여 가맹점주의 예측 가능성 확보 및 가맹본부에 의한 일방적이고 잦은 가격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가격 및 공급가격 결정기준이 변경될 수 있는 조건(예: 제조원가의 변화, 물류비용 변화, 가맹점주 원가율 변화 등)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변동 주기가 있다면 이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상당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여 가맹본부에서 위 규정을 들어 사전 협의절차를 형해화할 우려.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전에도 ‘협의’가 아닌 일정한 절차를 거쳐 ‘협의’만 가능한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 협의가 가능하다면, 사전 협의절차는 유명무실해 질수 있으므로 사후 협의 관련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

람직 ② ‘Ⅲ. 협의방식 3. 협의의 상대방’ 관련하여 가맹점주단체와 협의를 하는 경우 전체 가맹점주 100분의 70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주 전체와 협의를 하게 되면 제대로 된 협이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사실상 가맹본부에서 거래조건 변경 관련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에 불과하게 될 우려가 높으므로 실질적 협의를 위해서는 가맹점주단체가 협의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바람직. 그런데, 가맹점주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동의요건을 100분의 30 이하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V. 필수품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1. 로열티 방식 유도, 필수품목 공급자 확대 방안

○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한 가맹본부가 많고 이러한 가맹본부는 로열티를 받을만한 상표권 등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일률적으로 로열티 방식 전환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이런 상황에서도, 해장국 브랜드 ‘울엄마해장’이 2026년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매출 연동 로열티 1.1%(부가세 포함) 프로모션을 시행하는 등 로열티 방식 전환을 시도하는 사례가 존재²⁷⁾

- 주 수입원을 차액가맹금에 의존하는 가맹본부에서는,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수령하는 로열티 비율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하므로 다른 가맹본부와 경쟁 격화로 신규 가맹희망자 유치가 어려워져 수익 악화 우려를 제기. 가맹본부의 이러한 우려는, 역설적으로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더라도(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 관련 사항만으로 가맹희망자가 차액가맹금의 규모 등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을 드러냄

- 따라서, 공정위에서는 각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과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및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

27) 창업프랜차이즈신문, 2026. 3. 18. “해장국 프랜차이즈 ‘울엄마해장’, 가맹점 부담 낮춘 ‘1.1% 로열티’ 정책 시행”

을 직권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미흡시 시정조치를 통해 가맹본부의 로열티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가맹사업의 본질상 일정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의 필요성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할 것임. 다만, 필수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이라하더라도 (필수품목 공급자인)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이하, ‘가맹본부 등’)가 차액가맹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가맹점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기술의 독창성과 고유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필수품목의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가능한 일부 필수품목에 대해) 필수품목의 공급자를 ‘가맹본부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조직한 협동조합²⁸⁾ 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를 통해 공급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
- 즉, 가맹본부에서는 필수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가맹본부 등’을 제외한 공급자 즉, 가맹점주단체가 조직한 협동조합 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단체의 협의를 통해 공급자를 선정한다면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공정위 심사지침’에서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그 기준에 맞추어 다른 시공업체에게 시공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1개의 업체에만 시공을 맡기도록 하는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강제하는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예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인테리어 시공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주가 자유롭게 시공업체(인테리어 공급자)를 선정하는 관행이 정착되고 있음.

2. 가맹사업법에 필수품목 정의규정 신설 방안

28) 미국에서는 가맹점주들이 조직한 협동조합에서 필수품목을 공동구매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 정종열, 2023. 6. 22. “가맹사업 필수물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제문

○ 가맹사업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근거로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 그런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가맹사업법상 필수품목의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 사항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

- 특히, 가맹사업법 제 11 조 제 2 항 제 12 호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시행령인 ‘거래상대방의 구속 관련 별표 조항’ 등의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부 품목에 한정해 적용되어야 함. 그런데,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을 넘어 시행령 관련 규정까지 자세히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 문외한인 가맹희망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
-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맹사업을 시작하였다가 가맹본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필수품목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차액가맹금 형태의 가맹금을 지속적으로 부담하게 되면 가맹점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또한,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필수품목의 내역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가맹점주의 경영여건과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거래조건에 해당하므로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서상 필수품목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가맹사업 착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앞에서 살핀 것과 같은 이유로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의 적절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가맹사업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거래상대방의 구속 관련 별표 조항’과 관련 법원 판례 및 공정위의결 내용 등을 참고하여 ‘필수품목’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즉, 필수품목 정의규정을 가맹사업법에 신설할 것인지, 현재와

같이 시행령인 ‘거래상대방의 구속 관련 별표 조항’ 기재로 같음할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입법 정책적 사유로 치부하기 어렵다 할 것

- 위에서 살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가맹사업법 제 2 조 제 13 호에 ‘필수품목’에 대한 정의규정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함²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원재료·부재료·상품·용역·설비 또는 부동산(이하 “원재료 등”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나.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보호,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유지,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과 균질성 유지에 필수적일 것

다.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가공·구축 등에 사용된 기술의 독창성이나 고유성이 인정될 것

라.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것

- ‘필수품목’ 정의규정 각 목의 규정은 대부분 ‘거래상대방의 구속 관련 별표 조항’과 관련 법원 판례 및 공정위 의결 내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다.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가공·구축 등에 사용된 기술의 독창성이나 고유성이 인정될 것’을 포함할 경우 필수품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혀서 가맹본부의 사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 그러나, 공정위는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상표(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위반행위에 대한 심사에서 ‘단순 영업표지만 기재된 수저(세트), 일반 공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물품들은 ‘이차돌’이라는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사업에 필수적인 품목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유사·대체상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중심 상품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위 행위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부당하게 강제한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 12 조 제 1 항 제 2 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함. 즉, 공정위는 일반 공산품은 물론, 영업표지가 기재된 물품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소비자 제공 물품의 구매 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힘³⁰⁾. 또한, ‘공정위 심사지침’에서도 “가맹본부가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거래상대방을 정하여 구매하도록 하여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상품 등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예시로 들고 있음.

- 공정위의 필수품목 관련한 위와 같은 판단 및 ‘공정위 심사지침’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유사·대체상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의 경우’에는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가공·구축 등에 사용된 기술의 독창성이나 고유성이 인정’되는 물품만 필수품목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3. 가맹본부에서 임의로 필수품목을 지정하여 발생하는 문제 시정방안(시·도 등의 간이조정절차 신설)

- 가맹사업희망자는 가맹본부에서 제공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이를 근거로 한 가맹본부의 설명을 듣고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 또한, 가맹본부에서 필수품목을 정한 경우 관련 사항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함. 한편, 가맹본부에서 필수품목 관련 사항이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할 때, 등록관청은 가맹사업법 제 6 조의 3 제 1 항 각 호의 사유

29) 위 ‘필수품목’ 정의규정은, 2025. 4. 이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동일함(의안번호 제2210132호)

30) 공정거래위원회, 2025. 7. 28. “신메뉴 일괄 입고하고, 전국 평균 매출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한 ‘이차돌’ 가맹본부 제재” 보도자료

가 있는 경우 등록 거부 또는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이외에 필수품목 관련 사항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전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이는, 행정청의 등록업무의 성격상 불가피한 것인데, 이로 인해 가맹본부에서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필수품목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공정위 또는 법원의 가맹사업법 위반 판단이 있기 전에는 시정이 불가하여 가맹희망자는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을 근거로 사업 시작 여부를 판단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위 또는 법원의 위법 판단 전에는 가맹본부에서 정한 대로 차액가맹금 등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실제로, J 피자의 경우 정보공개서상 가맹점주의 원부재료 구입처를 가맹본부가 승인한 거래상대방으로 구속하고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품목은 총 40종에 이르며, 가맹계약서상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로부터 사전 승인받은 제품과 비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승인제품과 비품은 가맹본부가 승인한 업자에게만 구입하도록 규정. 공정위는 (상표권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거나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15개 위생 관련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로 하여금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여 가맹점주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시정명령³¹⁾을 내림.
- 가맹본부에서 임의로 필수품목을 지정하다보니 가맹사업법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으나 공정위 심사 전에는 이를 시정할 방안이 존재하지 않음³²⁾. 또한, 공정위에서 필수품목 지정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더라도 가맹본부에서는 소송절차를 통해 공정위 결정을 다룰 수 있어 최종 판단까지는 상당한 시간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가맹점주들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

○ 필수품목 관련 시·도 등에 간이분쟁조정절차 신설 방안을 제안.

-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시·도 등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협의회)에서는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구조이며,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가맹사업법 제 23 조).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에 이의가 있는 가맹점주의 신청 또는 협의회 직권으로 필수품목 지정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간이분쟁조정절차를 신설하여 가맹본부의 자의적 필수품목 지정으로 인한 문제를 조기에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 위 조정절차는 가맹본부의 조정거부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실효적일 것. 다만, 위 조정은 권고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가맹본부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는 크지 않음.

31) 공정위 사건번호 2022가조1467(피심인 000 주식회사)

32) 공정위에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면, 가맹본부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법원 소송절차를 통해 다투는 반면, 공정위에서 필수품목 지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위 공정위 판단은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 가맹점주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공정위 판단의 적절성을 다툴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가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